

2023년도 「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」

민간위탁 운영기관 모집 공고

2023년도 고용노동부 「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」 민간위탁 사업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모집하오니, 해당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신청전 반드시 상세공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2022. 12. 5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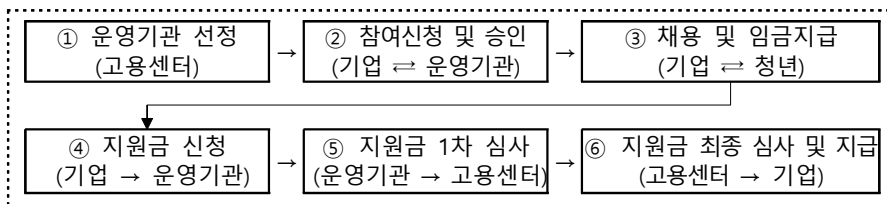
고용노동부장관

**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운영기관
모집 공고**

1 사업개요

❖ 아래 사업개요는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정확한 사업내용은 추후 게시될 사업 지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**(개요)**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시 2년간 최대 1,200만원 지원
- **(지원대상)** 사업 참여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연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*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
 - * 단, 지식서비스·문화콘텐츠·신재생에너지 산업, 청년창업기업, 미래유망기업, 지역주력산업, 고용위기지역 소재기업,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
- (취업애로청년) 만 15~34세의 ▲6개월 이상 실업, ▲고졸 이하 학력, ▲국민취업지원제도 후 최초 취업자, ▲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, ▲자립지원 필요 청년, ▲북한이탈청년 또는 ▲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 등
- **(지원내용)**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60만원씩 1년간 지원,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(2년간 최대 1,200만원)
- **(지원요건)** 정규직 채용, 6개월 이상 고용유지, 주 30시간 이상 근로, 4대 사회보험 가입, 최저임금 이상 지급 등
- **(지원한도)**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50%(비수도권 지역은 100%)까지 지원(단, 최대 30명)
- **(추진체계)** 고용센터, 민간위탁 운영기관



2 사업위탁 관련 주요내용

❖ 위탁규모, 위탁기간 등 사업위탁 관련 내용은 국회 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

- **위탁규모** : 총 9만명
 - * 단, 전체 위탁규모의 80%에 대해 우선 배정한 후, 운영기관의 사업 추진 실적 등을 고려하여 추후 잔여 20% 추가 배정 예정
- **위탁기간** : 위탁계약 체결일부터 배정받은 인원에 대한 1년차 지원금의 지급 및 정산 완료시 까지
- **위탁내용**
 - 기업 및 청년 등에 대한 사업 안내 및 홍보
 - 참여 희망기업과 청년의 발굴·모집 및 상담 지원
 - 참여 희망기업의 참여 신청을 접수, 지원요건 적격 여부 확인
 - 참여기업과 청년에 구인·구직 정보 제공 및 알선 지원
 - 참여기업의 장려금 신청을 접수, 지급요건 사전 심사
 - 참여기업에 대한 지도·점검 및 부정청구 등 조사
 -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침, 위탁운영 약정 및 기타 위탁자의 업무 처리 안내 등에서 정하는 사항 등
- **위탁 사업지역** : 위탁약정을 체결하는 고용센터 관할지역
- **위탁운영비**
 - ※ 위탁운영비 지급기준 등 세부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되 추후 확정 예정임
- **(지급기준)**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채용 청년* 1인당 20만원
 - *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6개월 이상 고용유지 후 1회차(6개월분) 이상 장려금을 지급 받은 청년
- **(지급방식)** '23년 상·하반기에 2회 분할 지급하되, 사업 종료 후 정산

3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

- **신청자격** :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
 - ① 「직업안정법」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유·무료 직업소개사업자 중 법인사업자
 - ②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제1호(대학), 제2호(산업대학), 제4호(전문대학)에 따른 학교 중 정부재정지원이 가능한 대학
 - * 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에 의한 산학협력단 포함
 - * 「직업안정법」 제18조에 따라 대학은 해당 대학 재학생·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소개는 신고를 하지 않고 무료직업소개 사업을 할 수 있음
 - ③ 다른 기관과 컨소시엄 형태의 신청도 가능
 - * 다만, 주된 사업자는 사업 신청 접수, 지원금 지급, 참여기업 지도·점검은 직접 수행하여야함
- **신청제한** :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
 - ① '22.12.31. 이전 고용노동부 민간위탁사업에 참여하여 부정수급 등으로 처분을 받거나,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위탁약정 취소 또는 해지 조치를 받고 모집공고일 현재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관
 - ② '22.12.31. 이전 고용노동부 민간위탁사업에 참여하여 당해 위탁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위탁약정 취소 또는 해지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관
- **신청규모** : 운영기관별 최소 300명 이상 위탁신청
 - * 단, 지방청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지역여건(사업장 수, 청년인구 수) 및 '22년 사업 참여실적 등을 고려할 경우 300인 미만으로 위탁 가능
- **기타사항**
 - '2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기관 평가 결과 A등급 기관은 우선 선정
 - '2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기관 평가 결과 B등급 기관은 심사 시 5점 이내 범위에 가점

- '2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기관 평가 결과 D등급 기관은 선정 제한
- **제출서류** : ①신청서(구비서류 포함) 10부 또는 ②신청서 원본 1부 및 제출한 서류 일체를 스캔(pdf형식) 후 저장한 USB 1개
 - * 8개 대표청은 제출서류 형식을 위 ① 또는 ② 중에서 선택하여, 지청에도 같은 형식의 서류가 접수되도록 안내
- 신청서는 고용노동부 누리집(www.moel.go.kr) 「뉴스·소식-공지사항-공고」에서 다운받아 작성

4 신청기간 및 방법

- **신청기간** : '22. 12. 5.(월) 10:00 ~ '22. 12. 16.(금) 18:00
- **신청방법** : 신청기관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(기업지원부서)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
 - * 우편 접수는 마감일 현재 도착분에 한함
 - **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고용센터가 아닌 다른 고용센터와 위탁약정을 체결할 수도 있음

5 선정절차

- **(심사)** 고용노동부 8개 지방청(대표지청 포함)별로 「선정심사위원회」를 구성하여, 신청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심사 후 선정
- **(결과 통보)** 신청서 접수한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기관에 결과 통보
 - * 고용노동부 누리집(www.moel.go.kr) 「뉴스·소식-공지사항」 게재 병행
- **(위탁약정 체결)** 고용센터-운영기관 간 위탁운영 약정을 체결하고 사업 수행

6 문의처

- **관할 고용센터(기업지원부서)** * 붙임 고용센터 문의처 참고

☐ (단 독) 『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』 운영기관 지정 신청서
☐ (컨소시엄)

기 관 현 황 (주사업자)	기 관 명		법 인 등 기 번 호 (사업자등록번호)	
	소 재 지			
	대 표 자		담 당 부 서	
	전 화 번 호 (F A X)		관 리 책 임 자 (E - m a i l)	
	직 업 소 개 업 신고(등록) 여부	☐ 무료직업소개사업 ☐ 유료직업소개사업		
	기 관 유 형	☐ 비영리 ☐ 영리		
기 관 현 황 (보조사업 자)	기 관 명		법 인 등 기 번 호 (사업자등록번호)	
	소 재 지			
	대 표 자		담 당 부 서	
	전 화 번 호 (F A X)		관 리 책 임 자 (E - m a i l)	
* 컨소시엄의 경우만 작성	컨 소 시 엄 사 업 내 용		보 조 사 업 비 율 (위탁비 기준)	

2023년 「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」 운영기관 지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○○지방고용노동(지)청장 귀하

첨부서류 (10부)	1. 신청기관 일반현황(법인등기부등본, 사업자등록증 포함) 2. 사업계획서 3. 사업신청 자격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(직업소개사업 등록증 등)
---------------	---

일 반 현 황

1. 현황 및 연혁

신 청 기 관 명		대 표 자	
소 재 지			
주 요 사 업 내 용			
연 락 처	전화번호 :	팩스번호 :	
설 립 연 도	년	월	
해 당 부 문 사 업 기 간	년	월	~ 년 월
주 요 연 혁(요약)			

2. 자본금 및 매출액(최근 3년간)

구 분	2021년	2020년	2019년	합계	평균
총 자 산					
자 기 자 본					
유 동 부 채					
고 정 부 채					
유 동 자 산					
당 기 순 이 익					
분야별 매출액					
- ○ ○ 분 야					
- ○ ○ 분 야					
자 기 자 본 비 율					
자기자본순이익률					
유 동 비 율					

※ 제안업체 설립 후 제안 당시까지의 주요 연혁과 제안업체의 재무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

※ 결산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 각 1부 첨부

3. 조직 및 인원

계	기획부	연구부	...	...		

※ 당해 기관 전체 인력현황을 알 수 있도록 기재(조직도 첨부 가능)

4.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부서의 인력현황

부서명	담당분야	성명	연령	최종학력	근무경력	직위	담당업무	자격증
	총괄책임자							
	등록							
	지원금 지급							

※ 자격증 사본 첨부

※ 「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파견근로자는 제외

[첨부 1-2]

사업계획서

1. 사업 목표

※ '23년도 목표인원(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채용 청년) 등 계량화된 목표 제시

2. 사업 내용

※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안내·홍보, 참여자(기업, 청년) 발굴·모집, 상담지원, 사업 신청 접수·적격 여부 심사, 지원금 신청·지급 등

3. 사업 계획

* 컨소시엄의 경우 주사업자, 보조사업자의 역할 분담 방안을 반드시 포함

가. 세부 추진계획(분야별 계획마련)

※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과 관련한 사업홍보, 청년 및 기업 발굴·모집·확보 방안, 적정 상담 등 채용지원, 지역 네트워킹 활용 방안, 지원금 적기 지급 방안, 부정수급 방지 대책 등 세부 실천계획을 현실성 있게 적시

나. 위탁사업비 운용계획

구분 \ 비목	산출내역	금액	구성비
○ 인건비 소계			
컨설턴트 보조원			
○ 경비 소계			
국내여비 유인물비 홍보비 섭외활동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· · ·			
○ 계			

※ <총사업예산> 목표 채용인원 × 20만원

다. 보유 시설 및 인력 활용계획

※ 보유 시설 전체 면적 및 상담실, 프로그램 운영실, 교육장 등의 면적{유형 자산(PC, 사무 기기 등) 및 무형자산(시행체계, 상담기법, 상담도구 등) 보유 현황}

4. 유사사업 추진 실적(최근 3년간)

구분	사업 수행 실적
2022년	■ ■ ■
2021년	■ ■ ■
2020년	■ ■ ■

※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 지원프로그램, 타 기관지원 또는 자체 청년층 직업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관련 실적

※ (정량실적) 참여자 모집 실적, 서비스 수행 실적, 관리 사업장 수, 취업률 등 성과확인이 가능한 계량화된 숫자를 중심으로 작성
(정성실적) 사업운영의 질적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

5. 월별 사업수행계획

월 또는 분기	목표인원	주요 사업내용	비고

사업계획서는 본 서식(A4용지, 한글파일) 및 내용을 참고로 전반적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되, 분량이 많을 경우 5페이지 이내 사업요약서를 첨부할 것

[서식 2]

『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』 운영기관 선정 심사표

○ ○ 기 관 심 사 표

기 관 명			
총 직원수/ 전담직원수		신청인원	
특이사항			

주요항목	세 부 항 목	평가 점수
사업수행 능력 (30점)	유사사업 수행 경험 및 실적 (10점)	
	취업알선의 전문성 및 전문인력 보유정도 (10점)	
	자체 알선망 및 시설 등의 적정성 (10점)	
사업내용 및 전략의 적정성 (50점)	사업 홍보 및 참여자(기업·청년) 발굴·모집 계획의 적정성 (20점)	
	참여자 지원·관리 방안 (30점)	
인적자원 운용 계획 (15점)	인적자원 운용 방안 (15점)	
유관기관과의 협력 (5점)	지역 네트워크 활용 (5점)	
‘22년 참여기관 가점(5점)	‘22년 사업 참여기관 중 B 등급을 받은 기관 (5점)	
총 계		

평가자: 위원 성명

(서명 또는 인)

『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』 운영기관 선정 심사기준

기 준	세 부 기 준	심 사 항 목
사업수행 능력 (30점)	유사사업 수행 경험 및 실적 (10점)	·최근 3년간 유사한 사업을 수행한 경험 및 실적(참여자 모집 실적, 취업률 등)
	취업알선의 전문성 및 전문인력 보유정도 (10점)	· 직업상담사 또는 상담경력자, 기타 전담인력 보유정도 등 청년층의 직업진로지도 및 취업알선과 관련된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(대상자 발굴·모집의 전문성, 상담 및 관철은 일자리 선별·관리능력 보유 여부 등) * 파견법에 따른 파견근로자 제외
	자체 알선망 및 시설 등의 적정성 (10점)	·취업알선전산망 보유여부, 관리프로그램, 상담·알선에 적합한 상담시설 보유실태 등
사업내용 및 전략의 적정성 (50점)	사업 홍보 및 참여자 발굴·모집 계획의 적정성 (20점)	·사업 홍보 수단(자체인터넷, 구인·구직 DB보유여부, 홍보 매체 등) 활용, IT 분야 맞춤 홍보 전략, 홍보 전략의 실현가능성, 예산 활용 계획의 적정성 등
	참여자 지원·관리 방안 (30점)	·주기별 지원금 신청 안내 및 적기 지급 처리, IT직무 재직 여부 및 부정수급 모니터링, 현장지도점검, 청년의 디지털 역량 향상 촉진 등 참여자 관리 방안
인적자원 운용계획 (15점)	인적자원 운용 방안 (15점)	·업무담당자 1인당 참여자의 적정성, 담당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
유관기관 과의 협력(5점)	지역 네트워킹 활용 (5점)	·지역 인력수급기관(특성화고, 대학 등)과의 협업, 지역 경제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 및 협업관계 구축 여부 등
비 고	'2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기관 평가 A등급 기관 : 우선선정 '2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기관 평가 B등급 기관 : 5점 이내 가점 부여 '2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기관 평가 D등급 기관 : 선정 제한	

붙임	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(문의처)		
지방청	고용센터	전화번호	비고
서울고용노동청	서울고용센터	02-2004-7370, 7378, 7394~95, 7911	
	서초고용센터	02-580-4922, 4940, 4972, 4978~79	
서울강남지청	서울강남고용센터	02-3468-4703, 4707~09, 4732, 4714, 4774, 4787, 4845	
서울동부지청	서울동부고용센터	02-2142-8434, 8443, 8486 8544, 8575	
서울서부지청	서울서부고용센터	02-2077-3496, 6025	
서울남부지청	서울남부고용센터	02-2639-2156, 2330, 2402	
서울북부지청	서울북부고용센터	02-2171-1803	
서울관악지청	서울관악고용센터	02-3282-9371, 9380, 9385, 9393	
중부고용노동청	인천고용센터	032-460-4641, 4672	
인천북부지청	인천북부고용센터	032-540-5745~5746, 5749	
	인천서부고용센터	032-540-2053	
부천시청	부천고용센터	032-310-8843, 032-320-8973	
	김포고용센터	031-999-0939	
의정부지청	의정부고용센터	031-828-0831~4, 0838, 0893	
고양지청	고양고용센터	031-920-3928, 3978, 3990, 3995	
경기지청	수원고용센터	031-231-7852, 7854~5, 7858	
성남지청	성남고용센터	031-739-3170, 4902, 4942	
안양지청	안양고용센터	031-463-3801, 3805, 3827, 0768	
안산지청	안산고용센터	031-412-6942, 6949	
평택지청	평택고용센터	031-646-1264~5, 1268	
강원지청	춘천고용센터	033-250-1924, 1928	
강릉지청	강릉고용센터	033-610-1993	
원주지청	원주고용센터	033-769-0960	
태백지청	태백고용센터	033-550-8645	
영월지청	영월고용센터	033-371-6254	
부산청	부산고용센터	051-860-1927, 1971, 2083	

지방청	고용센터	전화번호	비고
부산동부지청	부산동부고용센터	051-760-7245, 7286	
부산북부지청	부산북부고용센터	051-330-9806 9952, 9955, 9986	
창원지청	창원고용센터	055-239-0933, 0963, 0969	
울산지청	울산고용센터	052-228-3913, 3918	
양산지청	김해고용센터	055-330-6434, 6436	
	양산고용센터	055-379-2431	
진주지청	진주고용센터	055-760-6753, 6758	
통영지청	통영고용센터	055-650-1811~3, 1894	
대구청	대구고용센터	053-667-6032, 6034, 6038, 6041, 6786	
대구서부지청	대구서부고용센터	053-605-6450, 6460, 6465	
포항지청	포항고용센터	054-280-3051, 3055	
구미지청	구미고용센터	054-440-3361, 3364	
영주지청	영주고용센터	054-639-1127	
안동지청	안동고용센터	054-851-8062	
광주청	광주고용센터	062-609-8648~50, 8660	
전주지청	전주고용센터	063-270-9201~2, 9209, 9211, 9215, 9217	
익산지청	익산고용센터	063-840-6507, 6523	
군산지청	군산고용센터	063-450-0626, 0634	
목포지청	목포고용센터	061-280-0541, 0552, 0585	
여수지청	순천고용센터	061-720-9161, 9164	
대전청	대전고용센터	042-480-6011, 6016	
	세종고용센터	044-861-8992~3	
청주지청	청주고용센터	043-229-0715, 0719	
천안지청	천안고용센터	041-620-7443~4, 7446, 7449, 7492	
충주지청	충주고요엔터	043-850-4030, 4032	
	제천고용센터	043-640-9322	
보령지청	보령고용센터	041-930-6243, 6259	
서산지청	서산고용센터	041-661-5614, 5664	